

## 2018.7.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· 공시

2018.7.1.기준 개별공시지가를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 제10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 · 공시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· 공시합니다.

1. 필 지 수 : 2,209필지
2. 결정 · 공시일 : 2018.10.31.
3. 조사기준일 : 2018. 7. 1현재
4. 지가적용일 : 2018.10.31부터
5. 이 의 신 청 : 2018.7.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- 가) 이의신청기간 : 2018. 10. 31 ~ 11. 30.
  - 나) 이 의 신 청 인 :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
  - 다) 이의신청접수 : 군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· 면사무소
  - 라) 이의신청처리 :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

2018. 10. 31.

예 천 군

